

청년활동공간 「청춘벨딩」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우리구 청년활동공간인 청춘벨딩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이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성과와 향후계획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18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)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3. 위탁내용

가.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

시설명	소재지	연면적	규모	운영인력	위탁기관	위탁기간
청춘벨딩	시흥대로 138길 10-11 (독산3동)	395.15㎡	지하1층~ 지상4층	5명	꿈지락 네트워크 (대표:김규진)	2019. 4. 25.~ 2022. 4. 24. (3년)

나. 위탁업무

- 1) 청춘벨딩 인사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
- 2) 청춘벨딩 주요사업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
- 3)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

- 4)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
- 5)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
- 6) 대외 파트너십 구축 및 대외기관 등의 협력사업 추진
- 7) 청년의 권익신장 및 권리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
- 8) 개인정보관리 및 CCTV 운영
- 9) 그 밖에 “청춘빨딩“ 관리,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다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여부 결정
(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)

라. 재계약 위탁기간 : 2022. 4. 25. ~ 2025. 4. 24. (3년)

4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가.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청년활동공간 청춘빨딩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
- 나. 청춘빨딩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및 만족도 제고 등 책임감 있는 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

5. 관계법령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, 제19조의5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
- 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, 제9조

관계법령

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-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 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 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 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 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

제18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)

-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-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 2.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 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 4. 민간위탁 기간
 5. 수탁자 선정방식
 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제9조(계약의 체결 등)

-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- 2. 위탁기간
 - 3.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
 -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- 6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- 7.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
 - 8. 예산지원 내용
 - 9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성과평가)

- ① 구청장은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동안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,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